

## 층간소음 관리

순서	층간소음 분야	분 류	내 용	관 련 근 거	참 고 사 항																					
1	층간소음의 구분	직접 충격 소음	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	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 제2조	환경부 관할																					
2		공기 전달 소음	TV, 음향기기, 악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	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 제2조																						
3		<b>층간소음 대상 제외</b>	* 욕실,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·배수로 인하여 발생 소음은 제외 * 세대 내부공사 등으로 인한 사전 입주민에 양해 협조 및 절차준수로 지정기간 공사로 인한 순간적 한시적 소음은 제외 원칙, 심한 소음은 현장확인 조치	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 제2조  단지별 관리규약 및 규정으로 정한 사전협조 입주민 동의 후 승인절차	규약 규정 준수한 경우																					
4	층간소음 허용기준	* 분간 등가소음 - 1분간/5분간 평균 측정소음 중 큰 수치로 판단 - 직접충격음은 1시간당 3회 초과 시를 층간소음으로 인정 -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 측정해 가장 높은 값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4">층간소음의 기준(제3조 관련)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층간소음의 구분</th> <th colspan="2">층간소음 기준[단위: dB(A)]</th> </tr> <tr> <th>주간(06시~22시)</th> <th>야간(22시~06시)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직접충격소음</td> <td>1분간 등가소음도(Leq)</td> <td>39</td> <td>34</td> </tr> <tr> <td>최고소음도(Lmax)</td> <td>57</td> <td>52</td> </tr> <tr> <td>공기전달소음</td> <td>5분간 등가소음도(Leq)</td> <td>45</td> <td>40</td> </tr> </table>	층간소음의 기준(제3조 관련)				층간소음의 구분		층간소음 기준[단위: dB(A)]		주간(06시~22시)	야간(22시~06시)	직접충격소음	1분간 등가소음도(Leq)	39	34	최고소음도(Lmax)	57	52	공기전달소음	5분간 등가소음도(Leq)	45	40	*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(층간소음방지) * 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 제3조 별표3 *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*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(층간소음관리)	*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절차 적용 검토 *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제도 활용
층간소음의 기준(제3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
층간소음의 구분		층간소음 기준[단위: dB(A)]																								
		주간(06시~22시)	야간(22시~06시)																							
직접충격소음	1분간 등가소음도(Leq)	39	34																							
	최고소음도(Lmax)	57	52																							
공기전달소음	5분간 등가소음도(Leq)	45	40																							
5	층간소음 발생 시 민원 접수 및 처리 방안	피해자 (민원세대)	층간소음 피해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 접수 - 소음종류, 발생일시, 소음정도, 진행경과, 처리요구 내용 등	* 소음 발생세대 직접접촉 분쟁 금지 * 위법행위 : 문두드리기, 보복소음, 협박 등	형사처벌 가능 유의																					
		<b>관리주체 (확인 및 조치)</b>	* 피해사실의 접수 및 추가 확인요소 확인과 접수대장에 기록 * 민원인 소음피해에 공감표명 및 처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기 * 민원인에게 그정도 소음 수치발생, 이웃끼리 참아라 등 총용금지 *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협조 및 조사 * 층간소음 발생 세대 입주자들에게 소음발생 원인 중단 요구 * 소음차단 조치방안을 원인별도 제시 후 권고 요청 * 소음방지 협조 지연 및 중재불가 시 관리규약 처리절차 방안의 진행	*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등 * 입주민 계도: 안내방송, 안내문 게시, 중지요청, 법적 제재사례 전달 등 * 민원접수 및 협조요청, 중재, 조정, 법적 문제 안내와 내부생활수칙 범칙금안내 * 피해 민원세대 방문 조사 및 처리방안과 적극 처리의사 전달과 협조안내 * 차음대책의 안내와 적극 협조를 요청	* 위반 시 벌과금 규정 적용 안내 * 층간소음중재위원회 중재 요청																					
		<b>가해자 (소음발생 세대)</b>	* 소음발생 입주자 등은 소음민원 내용에 관리주체의 조치권고 협조 * 중재 비협조 및 계속 소음분쟁 시 법적 대응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함 인식 *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내용의 안내	*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*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* 민법 제750조 (불법행위)	* 법적 제재 사례 안내 * 벌과금부과																					
6	층간소음 억제방안 (관리규약, 규정으로 통제)	층간소음 생활수칙 수립 및 관리규약이나 소음규정으로 반영	* 입주자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금지행위 필히 준수 1. 뛰거나 문,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.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. 피아노 등 악기 등의 연주 4. 헬스기구,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.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.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	* 관리규약 (층간소음 생활규정) * 층간소음 자제행위 입주자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 1. 세탁, 청소 등 소음발생하는 가사일 2. TV, 라디오, 오디오 등 소음 발생행위 3. 주방 사용,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	* 위반 시 벌과금 규정 적용 * 층간소음 중재요청 방안 검토																					
7	층간소음별 대응	청소, 세탁기, 샤워 등 생활소음	층간소음 생활수칙 준수요구 및 계속 발생 시 법적 제재방안의 이행을 강조	*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(층간소음방지) * 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 제2조 * 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 제3조 별표3 * 관리규약 (층간소음 생활규정)	* 위반 시 벌과금 규정 적용 * 층간소음 중재요청																					
		발뒤꿈치, 의자, 가구 소음 등	소음방지 슬리퍼 착용 및 소음방지매트 및 가구신발 사용을 종용																							
		아이들 뛰는소리 공놀이 등	층간소음매트 설치, 생활수칙 준수요구 및 반복 시간대의 방송안내 등 실시																							
		악기, TV, 오디오 공기전달 소음	소음도 측정결과를 안내 및 생활수칙준수 요구와 반복시 법적조치의 경고																							
		동물소음 및 기타 소음	개 짖기멈춤 훈련 실시 요청 및 생활 소음별 발생 시간대 소음안내방송 실시																							